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7. 22 선고 2022가합3074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2. 6. 24.

판 결 선 고 2022. 7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F에게, i)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. 1. 31. 접수 제34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ii) 피고 C, D, E은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. 9. 2. 접수 제1279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별지 1, 2 기재 각 부동산(이하,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고 한다)은,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F이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이를 신축하는 데 원고의 파병수당 및 급여소득을 투입하는 등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재산으로, 그 중 원고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는 F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.

F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은닉하기 위해 또는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들과의 통모 아래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,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C, D, E 명의로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,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.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로서 F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.

2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와 F의 공동의 기여에 의하여 신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라거나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는 피고들에게 이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F과 피고들의 통모 아래 가장하여 한 법률행위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면으로 보나 그 이유 없으므로,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성지호, 판사 김병휘, 판사 정한영

별지